

2013년 4월 24일

# 제3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도 제3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13년 4월 24일(수), 17:30

② 회의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F 오키드룸

### ③ 출석임원

- 이사회 의장 : 김 용 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이 사 : 박 하 영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교수)  
차 동 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김 춘 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박 명 현 (주귀뚜라미 대표이사)  
안 현 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상 룡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이 수 철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이 종 찬 (한국마케팅과학회 이사)  
장 홍 순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 광 숙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 성 규 (한국RFID/USN융합협회 상임고문)  
최 승 호 (동신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홍 국 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 재적이사 15명 중 14명 참석
- 감 사 : 박 종 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

### ④ 불참인원

- 이 사 : 박 춘 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⑤ 상정안건(총 5건)

가. 보고안건 : 3건

- 제1호 제33회 및 제34회 이사회 결과보고(안)
- 제2호 제4회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안)
- 제3호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결과 보고(안)

나. 의결안건 : 2건

- 제1호 정관 개정(안)
- 제2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ID社) 출자(안)

- ⑥ 소관부서 :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인사총무팀  
 경영전략단 지식재산전략팀

2. 논의 결과(요지)

□ 보고안건 제1호 : 제33회 및 제34회 이사회 결과보고(안)

① 안건주요내용

- 제33회 정기이사회 개최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3. 2. 27(수), 07:30,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 참석자 : 재적이사 15명 중 11명 및 감사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의결안건	제1호 2013년도 원장 기본연봉 변경(안)	원안의결
	제2호 2012년도 결산(안)	원안의결
	제3호 2013년도 예산 운영계획(안)	원안의결
	제4호 2013년도 조직개편 및 직제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보고안건	제1호 제32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안)	원안접수
	제2호 2012년도 연간감사보고서(안)	원안접수
	제3호 2013년도 연간감사계획(안)	원안접수
	제4호 지역산업단 조직개편(안)	원안접수

○ 제34회 임시이사회 개최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3. 4. 5(금), 07:30,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 참석자 : 재적이사 15명 중 13명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의결안건	제1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2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위원 7명 선임
	제3호 원장 경영계약(안)	원안의결
보고안건	제1호 제31회 정기이사회 결과보고(안)	원안접수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원안접수

## □ 보고안건 제2호 : 제4회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안)

### ① 안건주요내용

#### ○ 개요

-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방안'(제28회 임시이사회 보고, '12.9.26)에 의거 이사회 주요 안건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ID社) 출자(안)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를 보고

#### ○ 주요 내용

##### 가.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4. 10(수), 17:30~19:3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위원 : 박하영 선임이사, 이상룡 이사, 최승호 이사, 안현실 이사
  - 간사 : 경영기획본부장

##### 나. 심의안건 및 결과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제1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ID社) 출자(안)	제35회 임시이사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의 필요

###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 ③ 논의결론

-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3호 :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 결과보고(안)

① 안전주요내용

○ 개요

- KIAT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12.12.28)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예산소요 추계를 보고

○ 주요 내용

가. 2012년도 단체협약 개정 방향 및 조항

- ① 경영평가 및 각 부처 감사 지적·개선 사항 및 ② 동일유사(중복) 조항에 대한 통합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정
- 개정조항(19개) : '1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 삭제 조항(10개) : 문서 및 개인정보의 공개 등
- 신설 조항( 2개) : 워킹맘 지원 및 인생이모작
- 수정 조항( 7개) : 조합원의 가입범위, 근로시간면제 한도자 등

나.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소요예산
제70조(지역봉사 활동)	○ 1사1촌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	36,000
제71조(선택적 복리후생)	○ 선택적복리후생비	390,600
제76조(학자금 보조비)	○ 학자금 지원	45,680
제77조(상해보험 가입)	○ 상해보험 가입	23,800
제98조(안전 및 보건관리)	○ 보건관리	3,920
제101조(건강진단)	○ 건강진단비	52,600
제105조(동호회 및 단체활동 지원)	○ 동호회 지원	7,000
합 계		559,600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원안접수

□ 의결안건 제1호 : 정관 개정(안)

① 안전주요내용

○ 개요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에(13.3.23)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을 개정

○ 주요 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각부 명칭을 규정에 반영
  - (당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안전행정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장 사 업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① (생략) 1.~13. (생략) ②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출자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① (현행유지) 1.~13. (현행유지) ②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출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5조(재산) ① (생략) 1. (생략)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른 진흥원의 재산 중 토지 및 건물 3. (생략) ② (생략)	제5조(재산) ① (현행유지) 1. (현행유지)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른 진흥원의 재산 중 토지 및 건물 3.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현 행	개 정(안)
<p><b>제6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b> 진흥원의 재산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등에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u>지식경제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6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b> 진흥원의 재산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등에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현행유지)</p>
<p><b>제10조(예산의 편성)</b>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u>지식경제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b>제10조(예산의 편성)</b> ① (현행유지)</p> <p>② (현행유지)</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현행유지)</p> <p>⑤ (현행유지)</p>
<p><b>제12조(운영계획의 수립)</b>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u>지식경제부장관</u>에게 제10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2조(운영계획의 수립)</b> ① (현행유지)</p> <p>② (현행유지)</p> <p>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10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3조(결산서의 제출)</b> ① (생략)</p> <p>② 진흥원은 <u>지식경제부장관</u>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b>제13조(결산서의 제출)</b> ① (현행유지)</p> <p>② 진흥원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p> <p>1. (현행유지)</p> <p>2. (현행유지)</p>



현 행	개 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임원 및 직원</b></p> <p><b>제16조(임원의 임면)</b>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지식경제부장관</u>이 임명한다.</p> <p>② 이사는 <u>지식경제부장관</u>이 임명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p> <p>1. <u>지식경제부</u> 산업기술정책관 2~3. (생략) 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임원 및 직원</b></p> <p><b>제16조(임원의 임면)</b>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임명한다.</p> <p>② 이사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임명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p> <p>1. <u>산업통상자원부</u> 산업기술정책관 2~3 (현행유지) ③~④ (현행유지)</p>
<p><b>제19조(경영계약) ① (생략)</b></p> <p>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u>지식경제부장관</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경영계약안에 대해 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u>지식경제부장관</u>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u>지식경제부장관</u>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p>	<p><b>제19조(경영계약) ① (현행유지)</b></p> <p>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경영계약안에 대해 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p><b>제2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략)</b>            ② 원장이 <u>지식경제부장관</u>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생략)</p>	<p><b>제2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현행유지)</b>            ② 원장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현행유지)</p>
<p><b>제22조(임원의 직무 등) ① (생략)</b>            ② ~ ⑤ (생략)            ⑥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u>지식경제부장관</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생략)</p>	<p><b>제22조(임원의 직무 등) ①(현행유지)</b>            ② ~ ⑤ (현행유지)            ⑥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현행유지)</p>
<b>제5장 이사회</b>	<b>제5장 이사회</b>
<p><b>제31조(해임요청 등) ①</b>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지식경제부장관</u>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p>	<p><b>제31조(해임요청 등) ①</b>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유지)</p>
<b>제6장 부설기관 등</b>	<b>제6장 부설기관 등</b>
<p><b>제33조(부설기관) ① (생략)</b>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및 <u>지식경제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33조(부설기관) ① (현행유지)</b>            ② (현행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및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b>제7장 보 칙</b>	<b>제7장 보 칙</b>
<p><b>제35조(정관의 변경)</b>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지식경제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35조(정관의 변경)</b>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p><b>제38조(경영목표의 수립)</b>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u>지식경제부장관</u>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지체 없이 <u>지식경제부장관</u>과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8조(경영목표의 수립)</b>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3. (현행유지)</p> <p>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지체 없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9조(경영공시)</b> ① 진흥원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u>지식경제부장관</u>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p> <p>1.~9. (생략)</p> <p>10. <u>지식경제부장관</u>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p> <p>11.~12. (생략)</p> <p>② ~ ③ (생략)</p>	<p><b>제39조(경영공시)</b> ① 진흥원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p> <p>1.~9. (현행유지)</p> <p>10.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p> <p>11.~12. (현행유지)</p> <p>② ~ ③ (현행유지)</p>
<p><b>제44조(해산)</b>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u>지식경제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44조(해산)</b>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현행유지)</p>

현 행	개 정(안)
<u>&lt;신 설&gt;</u>	<u>부 칙(2011. 00. 00)</u>  <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 다.</u>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③ 논의결론

-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2호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ID社) 출자(안)

① 안건주요내용

○ 개요

- 정부 출연재산에 대한 공적 통제력 확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출자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대주주(삼성, LG, SK 등)중심의 상업적 운영에 대한 균형적 역할

- 공공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이 되는 바, ID사 본연의 시장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지분율은 30% 미만으로 유지
- '13.3월 현재 총 자본금 447.5억원중 공공지분은 11.2%(한전)

(단위 : 억원, %)

구분	삼성 계열	SK 계열	LG 계열	기타 대기업	중소 기업	우리 은행	한전 (공기업)	합계
금액	100	90	80	115	2.5	10	50	447.5
지분율	22.3	20.1	17.9	25.7	0.6	2.2	11.2	100.0

나. 따라서, 진흥원은 100억원을 출자(공공지분은 총 27.4% 수준)

(단위 : 억원, %)

구분	진흥원	삼성 계열	SK 계열	LG 계열	기타 대기업	중소 기업	우리 은행	한전 (공기업)	합계
금액	100	100	90	80	115	2.5	10	50	547.5
지분율	18.3	18.3	16.4	14.6	21.0	0.5	1.8	9.1	100.0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KIAT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ID사 출자 이전에 철저하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정부나 KIAT가 출자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당초) 대주주 중심의 일방적인 상업적 운영에 대한 견제역할 도모
  - (변경)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과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 도모

③ 논의결론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 3. 제35회 임시이사회 참석자 서명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구분	안건명	회의결과
의결 안건	제1호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제2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ID社) 출자(안)	수정의결
보고 안건	제1호 제33회 및 제34회 이사회 결과보고(안)	원안점수
	제2호 제4회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안)	원안점수
	제3호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 결과보고(안)	원안점수

위와 같이 제35회 임시이사회 회의결과를 확인함.

2013. 4. 24.

구분	성명	구분	성명
의장	김용근 (인)	전임이사	박하영 (인)
이사	차동형 (인)	이사	박춘섭 (인)
이사	김춘호 (인)	이사	박명현 (인)
이사	안현실 (인)	이사	이상룡 (인)
이사	이수철 (인)	이사	이종환 (인)
이사	장홍순 (인)	이사	최광숙 (인)
이사	최정규 (인)	이사	최승호 (인)
이사	홍국선 (인)	감사	박종기 (인)